

[일련번호 : 15]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복무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9에 따라 산정·징수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3년 및 2024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정산 과정에서, 정산 결과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부족액은 근로자로부터 추가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예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 34명에 대해 총 239,350원을 미징수하였고, 39,410원을 근로자에게 미환급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미정산액

연 번	성명	생년월일	2023년분 보험료 미정산액				2024년분 보험료 미정산액			
			고용보험			산재	고용보험			산재
총 34명			근로자 실업급여	사업주 실업급여	사업주 고안직능	사업주	근로자 실업급여	사업주 실업급여	사업주 고안직능	사업주
1			25,230	25,230	23,820	26,390	5,000	5,000	4,700	4,840
2			-2,640	-2,640	-2,500	-2,750				
3			-980	-980	-930	-1,020	5,600	5,600	5,300	5,440
4			-2,490	-2,490	-2,360	-2,600				
5			5,800	5,800	5,470	6,070	5,600	5,600	5,300	5,440
6			-7,660	-7,660	-7,240	-8,000	7,100	7,100	6,700	6,840
7			-6,990	-6,990	-6,600	-7,300	6,900	6,900	6,500	6,640
8			6,920	6,920	6,530	-2,600				
9			-2,960	-2,960	-2,790	-3,090				
10			4,280	4,280	4,040	4,480	4,200	4,200	4,000	4,040
11			28,090	28,090	26,530	29,380	5,000	5,000	4,700	4,840
12			-2,490	-2,490	-2,360	-2,600	3,000	3,000	2,800	2,940
13			-1,280	-1,280	-1,220	-1,340	4,600	4,600	4,300	4,440
14			-3,090	-3,090	-2,930	-3,230	5,600	5,600	5,300	5,440
15			1,830	1,830	1,720	1,920	7,100	7,100	6,700	6,840
16			1,240	1,240	1,180	1,310				
17			4,280	4,280	4,040	4,480	4,600	4,600	4,300	4,440
18			-2,490	-2,490	-2,360	-2,600	4,600	4,600	4,300	4,440
19			1,700	1,700	1,610	1,790	7,500	7,500	7,100	7,240
20			-2,810	-2,810	-2,650	-2,930				
21			-590	-590	-560	-600	4,600	4,600	4,300	4,440
22			13,480	13,480	12,730	14,100	5,400	5,400	5,100	5,240
23			-2,940	-2,940	-2,780	-3,070	4,400	4,400	4,100	4,240

24					7,100	7,100	6,700	6,840	
25					3,000	3,000	2,800	2,940	
26					3,800	3,800	3,600	3,640	
27					7,100	7,100	6,700	6,840	
28					3,240	3,240	3,040	3,170	
29					10,960	10,960	10,380	3,640	
30					5,400	5,400	5,100	5,240	
31					4,000	4,000	3,800	3,840	
32					3,000	3,000	2,800	2,940	
33					4,200	4,200	4,000	4,040	
34					3,900	3,900	3,700	3,740	
총 계		53,440	53,440	50,390	46,190	146,500	146,500	138,120	134,650
- 총 미징수액 : 239,350원		- 2023년 근로자부담금 39,410원 미환급, 92,850원 미징수							
- 총 미환급액 : 39,410원		- 2024년 근로자부담금 146,500원 미징수							

※ (-) :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 (+) : 근로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기간제근로자 34명에 대하여 미징수한 보험료 총 239,350원을 징수하고, 환급하지 아니한 보험료 39,410원을 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고,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